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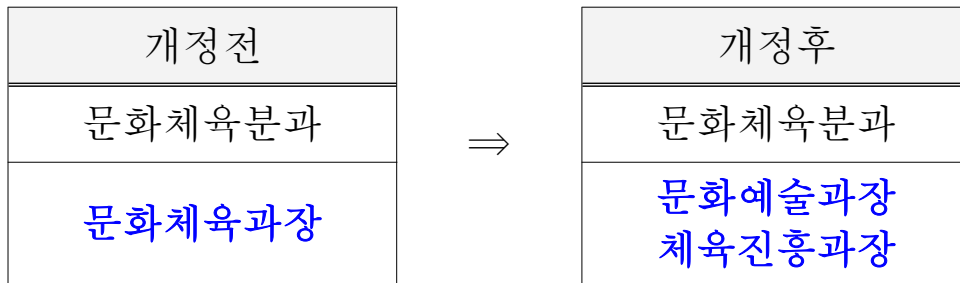
군 산 시 발 전 협 의 회 설 치 및 운 영 조 례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1. 제안이유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 군산시 발전협의회 구성체계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표1) 협의회 구성 체계 및 직무
 - 문화체육분과 간사변경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라. 입법 예고기간 : 2014. 3. 3 ~ 3. 23(20일간) - 의견접수 없음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이 인우



2014년 5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552호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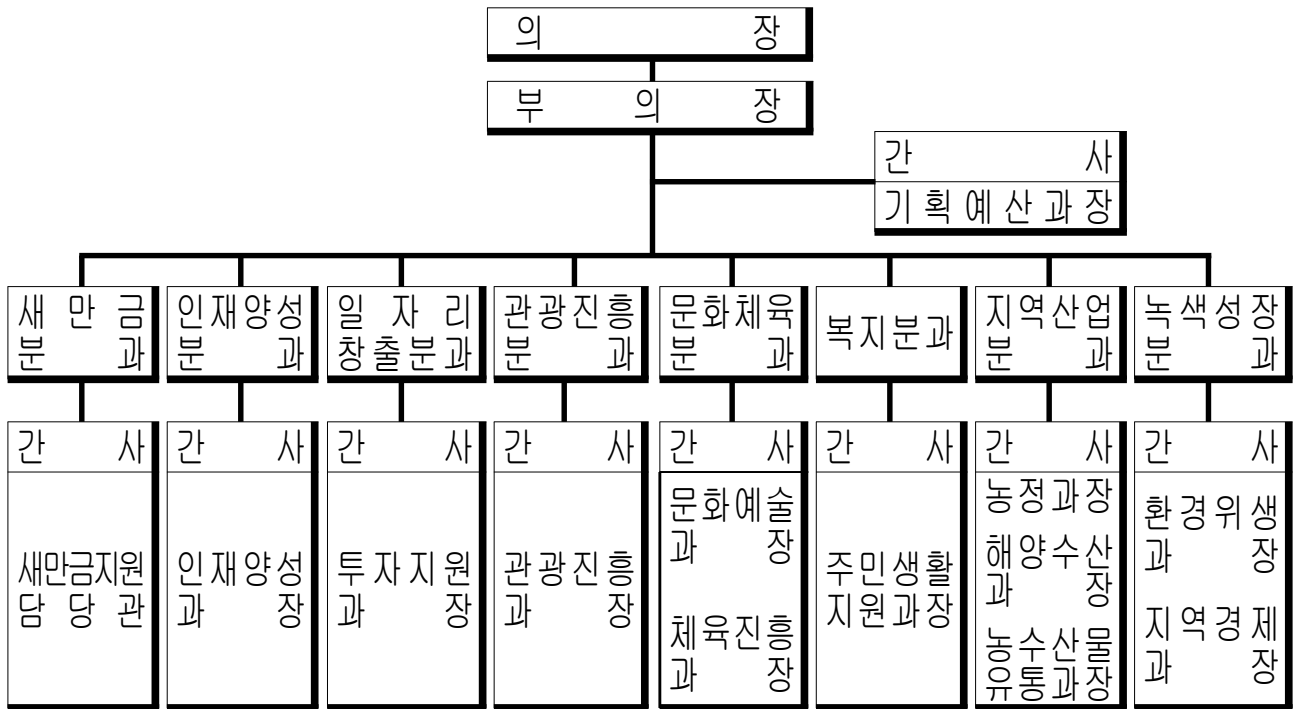
별표 1의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협의회 구성 체계 및 직무

구성체계 : 8개 분과 - 50명 이내



분과별 직무

새만금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자원 활용 군산발전방안 연구 • 새만금사업 등 법률자문 • 새만금산업 인프라 전략수립
인재양성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재양성, 교육환경개선, 평생학습도시조성 등 교육지원 사업연구 개발 • 중장기 교육진흥사업 연구개발
일자리창출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일자리 발굴육성 •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전략수립
관광진흥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축제개발 • 중장기 관광산업 육성방안 연구
문화체육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인프라구축 • 체육진흥을 위한 방안 연구개발
복지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방안 모색 •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전략수립
지역산업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경쟁력향상 사업발굴 •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방안 연구 • 농수산물 브랜드강화 방안연구
녹색성장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대응정책 자문 •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지원 • 녹색성장 및 과학기술산업 육성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산시장 권한대행 이 수



2014년 5월 15일

군산시 규칙 제553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임단원”을 “단원”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연주실기평정은 블라인드 평정을 원칙으로 하고”를 “연주실기평정 시”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단원”을 “상임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야간 정기(기획)공연 다음날 오전은 휴무 또는 체력단련 시간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휴가 및 연가)”를 “(연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조사 별 휴가 및 연가 일수표는 별표 5 및”을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으로 한다.

제8조의2 중 “한다”를 “구분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0일”을 “연 6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거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③ 단장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3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공연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예술활동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단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 ① 단원은 만6세이하 취학전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1년 이내의 무급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② 단원은 신체·정신상의 장애 및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단장의 허가를 득한 후 6개월 미만의 무급 질병휴직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4-760호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산 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우리시를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풍부한 관광·문화자원과 아름다운생태자원 등 관광명소를 널리 홍보하고,
-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의 제도적·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시티투어 운영(안 제3조)
 - 운영지원 : 예산확보, 코스 개발, 전담가이드 배치 등
 - 운영시간 : 09:30 ~ 18:00(운영시간 단축 또는 연장 가능)
 - 운영코스 :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 변경 가능
- 탑승료 징수(안 제4조)
 - 개인 : 성인 - 5,000원.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 2,500원
 - 단체 : 성인 - 4,000원.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 2,000원
- 탑승료 면제 및 환불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6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군산시장(참조 : 관광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2)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장소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관광진흥과(T.063-454-3334, F.063-454-33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군산시 홈페이지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 담당자 최대진(063-454-333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산 새만금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 라 한다)”란 군산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탑승료”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자”로 한다.
5. “군인”이란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 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6.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시티투어 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09:30~18:00까지로 하며, 운행코스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당일 이용자 전원이 요청할 경우 코스를 한시적으로 변

경·운영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

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제4조(탑승료 징수)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탑승료는 “별표2”와 같다.

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따른 탑승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5조(탑승료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4급까지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

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시각은 4급)의 경우 보조자 1명 추가 감면)

3. 그 밖에 시의 홍보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탑승료의 환불)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탑승료 전액, 당일 취소한 자는 탑승료의 7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군산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운행 코스

(제3조제2항 관련)

□ 3개코스 : 은파-새만금, 근대문화, 고군산군도-새만금

○ 은파-새만금 코스 : 수, 금

시외버스터미널(09:30)⇒군산역(10:00)⇒금강철새조망대⇒근대
역사박물관 일원⇒은파관광지(물빛다리)⇒새만금산업단지 홍보
전시관⇒풍력발전기⇒새만금방조제(야미-신시-가력)⇒비응항(새만금
수산시장)⇒군산역(17:20)⇒시외버스터미널(17:40)

○ 근대문화 코스 : 토(11~3월), 일

시외버스터미널(09:30)⇒군산역(10:00)⇒임피역⇒발산리유적지
⇒이영춘가옥⇒농특산물 홍보갤러리⇒근대역사박물관 일원⇒
신흥동 일본식가옥⇒근대역사체험공간⇒동국사⇒수산물종합
센터(해망동)⇒채만식문학관⇒군산역(17:20)⇒시외버스터미널(17:40)

○ 고군산군도-새만금 코스 : 토(4월~10월)

시외버스터미널(09:30)⇒군산역(10:00)⇒금강철새조망대⇒고군산
군도 선상 유람(선유도관광)⇒새만금방조제(야미-신시-가력)⇒군산역
(17:20)⇒시외버스터미널(17:40)

※ 코스 및 운행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별표 2】

탑 승 료

(제4조제1항 관련)

□ 시티투어 탑승료

(단위 : 원)

구 분	탑 승 료		비 고
	개 인	단 체	
성 인	5,000	4,000	
초중고, 경로, 장애인, 군인	2,500	2,000	

군산시 공고 제2014-774호

군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15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공공자전거 수리 및 시스템관리, 자전거문화센터 기능 조례에 삽입
- 자전거정책 부서 변경에 따른 활성화 위원회 당연직 변경

2. 주요내용

- 제2조 4항(정의) : 자전거문화센터 정의 삽입
 - 자전거문화센터란 공공자전거수리 및 시스템관리, 자전거관련전시관, 시민자전거교육을 하는곳을 말한다
- 제16조 ①, ②항(공공자전거 및 자전거문화센터운영)
 -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문화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근거규정 마련

○ 제24조 ③항(위원회의 구성)

- 자전거정책 관련부서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 변경

(주민복지국장 제외, 건설교통국장 삽입)

3. 의견제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 6. 05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건설과(전화 : 454-3632, FAX : 452-8172,

전자우편 : az4775@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자전거정책계(전화 454-3632) 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군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자전거 문화센터"란 공공자전거 수리 및 시스템관리, 자전거관련 전시관, 시민 자전거교육을 하는 곳을 말한다.

제16조(공공자전거 및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p> <p>1.</p> <p>2.</p> <p>3.</p> <p>4. <u>"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u></p> <p>제16조(공공자전거의 운영) ① <u>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은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4조(위원회의 구성)</p> <p>①</p> <p>②</p> <p>③ <u>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주민생활지원국장, 환경위생과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교통행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u></p>	<p>제2조(정의)</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u>"자전거 문화센터"란 공공자전거 수리 및 공공자전거 시스템관리, 자전거관련 전시관, 시민 자전거교육을 하는 곳을 말한다.</u></p> <p>제16조(공공자전거 및 자전거문화센터 운영) ① <u>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자전거 및 자전거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문화센터 및 공공자전거의 대여·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24조(위원회의 구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건설교통국장, 건설과장, 도시계획과장, 교통행정과장, 환경위생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u></p>

군산시 공고 제2014-775호

군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15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제10조 2(공영자전거 운영사업) 및 군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 제16조에 의거 공공자전거 이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

2. 주요내용

- 군산시 공공자전거무인대여시스템 이용료 납부에 관한사항
- 공공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운영관리 및 지휘감독에 관한사항

3. 의견제출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 6.05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건설과(전화 : 454-3632, FAX : 452-8172,

전자우편 : az4775@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건설과 자전거정책계(전화 454-363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군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이용료) 군산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에 의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자의 의무) 공공자전거는 무인대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여하고, 자전거를 훼손 시에는 수리비용을 부담 하고, 분실 시에는 공공자전거 이용자 보험약관에 의거 변상 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및 기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자전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이하의 어린이
3. 기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공공자전거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5조(위탁운영)

① 『군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2항에 의거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1. 위탁 수행에 필요한 인력·차량확보 및 재정적 부담능력, 공신력 등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② 위탁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하며, 제1항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제3자에게 매매, 양여, 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휘·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 시킬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되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준용) 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산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와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군산시 공공자전거 이용료

구 분		회 원	비회원	비 고
기본 사용료 (3시간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권 : 20,000원 • 6개월 : 13,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회권 : 1,000원 	○ 추가 사용료 산정에 있어 60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추 가 사용료	기본시간 (3시간) 초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당 : 500원 	

군산시 공고 제2014 - 777호

군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군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1. 조 례 명 : 군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운영 조례안
2. 제정사유
 - 가. 규제개선은 현장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며, 현장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요청, 이익·불만 표출이 필요
 - 나.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현장 제정
 - 행정서비스현장규정(대통령훈령)을 근거로 지자체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을 제정·시행하고자 함
3. 관련법령 : 행정서비스현장규정 제4조 제1항(대통령훈령 제257호)
4. 주요내용
 - 가. 현장의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4조)
 -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우선의 원칙·구체화의 원칙·적극적 홍보의 원칙·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나. 현장의 내용을 정함(안 제5조, 별지 1)

- ◆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 기업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금지
- ◆ 규제신고 고객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다. 현장의 구성, 개정,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6조~제8조)

라. 현장의 공표 및 홍보, 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우수부서 및 공무원의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함(안 제9조~제12조)

5. 예고기간 : 2014. 05. 15 ~ 06. 05(21일간)

6. 의견제출

- 「규제신고고객보호·서비스현장 운영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 6.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할 곳

우573-703/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전화 : 063-454-2742, FAX : 063-454-2729)

이메일 : kim630818@korea.kr

○ 의견제출 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서비스현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군산시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현장’(이하"현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현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현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현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
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보상 및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현장의 내용) ① 현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② 합리적인 현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군산시 행정서비스 현장 운영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현장의 구성) 현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전문
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 및 보상조치
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
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
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현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현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현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 ② 현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현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현장 심의회 심의·확정
3. 현장 공표 및 시행

제8조(현장의 실천) ① 모든 직원은 현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현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③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현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현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보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 및 홍보한다.

② 규제신고인이 현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현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 ① 각 부서에서는 현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군산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ombudsman(기업민원처리 대리인)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 및 중소기업 ombudsman(기업민원처리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 접수된 사항이 타 부서 소관업무인 경우 즉시 소관부서로 이첩하여 해당부서에서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현장에 따라 즉시시정 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하여 기업규제 신고 고객에게 통지하고 각 부서에 반기별로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① 기업지원업무담당 과장은 현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산시장은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현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군산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 · 서비스 현장

우리 군산시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기업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 · 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규제개선, 어려움 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 고객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만족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4-784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 산 시 투 자 유 치 촉 진 및 기 업 지 원 에 관 한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입 법 예 고

1. 제안이유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유치”의 정의 등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투자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 지역 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투자양해각서 체결 또는 투자진흥기금을 지급 받는 업체에 대해 시내 업체의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근거를 마련

2. 주요내용

- 정의에 “유치”, “사업개시일” 등 용어 신설(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개정 (안 제4조)
 - 위원장 : 군산시장→군산시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호선)
 - 위 원 : 11명이내→10인이상 15인 이내로
- 신·증설 기업 지원에 대한 지원 지급 기준 개정 (안 제19조의3)
 - 증설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 제외
- 우선 구매 등 신설 (안 제19조의7)
 - 지역의 재화나 서비스 이용에 시내업체의 판매 촉진을 위해 우선 구매

요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지원 등의 결정 신설 (안 제34조의2)

- 보조금 지급시 유치 노력하였거나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전화 454-2733, 팩스 454-27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투자유치계(전화 454-2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유치”란 군산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8.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본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33조”를 “제142조”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증설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에서 토지구입비는 제외한다)

제19조의5의 제목 “(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 기업 지원)”을 “(수도권 기업 및 신·증설 기업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수도권기업 및 신·증설기업”을 “수도권기업, 신·증설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하며,”로 한다.

제5장에 제19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7(우선 구매 등) 시장은 투자양해각서 체결 또는 투자진흥기금을 지급받는 업체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등의 계약 및 구매시 시내 업체의 재화나 서비스 판매 촉진을 위해 우선 구매를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지원 등의 결정)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은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시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26.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 26. (현행과 같음)</p> <p>27. “유치”란 <u>군산시가 투자대상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u></p> <p>28. “사업개시일”이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에 <u>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본다.</u></p>
<p>제4조(구성 등) ① <u>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u></p> <p>② ~ ④ (생략)</p>	<p>제4조(구성 등) ① <u>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u>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군산시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u></p>	<p>제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 <u>제142조</u>----- ----- ----- ----- -----.</p>

<신 설>

를 협조 요청 할 수 있다.
제34조의2(지원 등의 결정) 이 조
례에 따라 지원되는 각종 보조
금은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 노
력하였거나 시와 투자협약을 체
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4-785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및 신설함으로써 투자진흥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 실시기관을 명시 (안 제7조)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적용
- 신·증설 기업 지원의 신청 기간 및 신청서 신설 (안 제9조의4)
 -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 완료 후 1년 이내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투자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03 군산시 시청로 17번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전화 454-2733, 팩스 454-2729)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투자지원과 투자유치계(전화 454-27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규칙 제 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8조의8”을 “제18조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3의 제목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을 “(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신·증설 기업 지원) 조례 제19조의3 규정에 의해 투자시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6호서식]

신·증설기업 지원 투자보조금 신청서(안 제9조의3관련)

지원 대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본사소재지			전화		
				팩스		
입주유형		<input type="checkbox"/> 분양 <input type="checkbox"/> 매입		입지유형	<input type="checkbox"/> 개별입지 <input type="checkbox"/> 산업단지	
보조금유형		<input type="checkbox"/> 입지지원 <input type="checkbox"/>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input type="checkbox"/> 공장(<input type="checkbox"/> 전부, <input type="checkbox"/> 일부) <input type="checkbox"/> 본사 <input type="checkbox"/> 연구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업기간		본사 : 년 월(. . .), 공장 : 년 월(. . .), 연구소 : 년 월(.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가(원/㎡)		원		집단화 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기업구분		
				<input type="checkbox"/> 대 <input type="checkbox"/> 중견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사업면적(㎡)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투자완료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생산품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부지분양(매입)금액		천원				
설비투자금액 (A+B+C+D)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건축비(A)		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천원		
보조금총액						
보조금신청액(국비)				천원		
지자체분담금(광역+기초)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제14조제5항)		<input type="checkbox"/> 보증보험증권 <input type="checkbox"/> 저당권 설정 <input type="checkbox"/> 가등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9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3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증설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군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증설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사업자 등록증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 산업·농공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5.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6.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3월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6조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7. 공장등록증명원(부분가동 공장등록증 포함) 1부
8.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9.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제2항 및 제18조의8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1인당지원액은 교육훈련 내용 등의 특성을 감안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p> <p>② (생략)</p> <p><신설></p>	<p>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 ----- 제18조의4-----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기능)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p>
<p>제9조의3(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조례 제19조의5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p>	<p>제9조의3(국고지원이 수반되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 ----- .</p>

다.

<신 설>

제9조의4(신·증설 기업 지원) 조
례 제19조의3 규정에의해 투자
시설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은 부분공장등록 또는 공장등록
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해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4 - 786호

공 고

우리시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발전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군산시발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목적)의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를 “조례는” 이라 변경
- 안 제2조(기능)의 제1호 및 제3호 규정 각각 삭제
 - 제1호 :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제3호 :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회의 등)의 제2항 “서면”을 “서면 또는 유선” 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30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5F
(☎ 063-454-2333, FAX:452-8157)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마.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기획예산과 창의분권계(☎ 063-454-2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제2항 본문 중 “서면”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한 군산시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 ----- ----- ----- ----- -----.</p>
<p>제2조(기능) 군산시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p>	<p>제2조(기능) ----- ----- -----.</p>
<p>1.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생 략)</p> <p>3.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p> <p>4. · 5. (생 략)</p>	<p><삭 제></p> <p>2.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회의 등) ① (생 략) 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6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선 면 또는 유선-----.</p>

군산시 공고 제2014-800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제23655호,2012.3.13,전부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나. 법제처 주관“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추진의 일환으로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변경하여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1조)

나. “가정상담팀,가정교육팀,가정문화팀”을 “가족교육팀, 가족돌봄팀, 가족상담팀, 가족문화팀,아이돌보미팀”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다. 종전의 “군산시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 할 수 있다”는 위수탁 공고시 신청자격을 개선하여 “ 「고등교육법」 제2에 따른 학교”로 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4항제2호)

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정비

- 제3조에서 규정하는 ⇒ 제3조에 따른
- 4인 ⇒ 4명
- 범위 내 ⇒범위
- 강구하여야 ⇒ 마련하여야
- 기타 ⇒ 그 밖에

3. 의견제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4년 6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여성아동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73-703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 여성아동복지과(전화063-454-3213, 팩스063-452-9477)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정책계(전화 063-454-3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을 “군산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센터”를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군산시가 소유”를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제3조에서 규정하는”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을 “가족교육팀, 가족돌봄팀, 가족상담팀, 가족문화팀, 아이돌보미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4인 이상으로 하되, 가족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를 “4명 이상으로 하되,”로,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을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필요한”을 “요구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10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로 한다.

제12조 중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 하고자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에 설치하는 <u>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u> ----- ----- ----- <u>군산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u>----- ----- -----.</p>
<p>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u>군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다만,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p>② (생 략)</p>	<p>제2조(설치 및 명칭) ① <u>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u>-- <u>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가 소유</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시설) 시장은 센터가 <u>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 상담실 ·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u> 다만 필요한 경우 군산시 소</p>	<p>제4조(시설) ----- <u>제3조에 따른</u>----- ----- ----- -----.</p>

유 공공기관의 시설을 같이 활용
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 가
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
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
요한 팀을 둔다.

② (생 략)

③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
로 하되, 가족관련 학사 학위 이
상 소지자로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
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
략)

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
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①·② (생 략)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
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
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 우에는

-----.

제5조(조직) ① ----- 가족
교육팀, 가족돌봄팀, 가족상담
팀, 가족문화팀, 아이돌보미팀--

-----.

② (현행과 같음)

③ -----
----- 4명 이상으로 하
되,-----
-- -----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

제6조(위원회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범위-----
-----.

제7조(자원봉사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범위---
-----.

제8조(강사) ① -----

--- 요구되는 -----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 ~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군산시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11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

-----.

② (현행과 같음)

③ ----- 범위-----
-----.

제9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

1.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 그
밖에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주민참여) ① -----

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야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
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
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할 수 있다.

---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지도감독) -----
----- 관하여
장부 또는 관련 서류-----


-----.

군산시 고시 제2014-50호

도로명주소(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5. 15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36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00건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4-39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분할개시결정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4-781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보가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 (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4. 5. 8 ~ 2014. 5. 28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군산		월명	1-3	대	248	송성*	1951.10.22	군산시 월명동 *****	안재*
군산		중앙로1가	15-2	대	148.8	서성*	1947.01.26	군산시 중앙로1가 *****	고석*
군산		장재동	206-5	대	291	이영*	1940.02.29	군산시 장재동 *****	윤용*
군산	임피	읍내	265-12	대	109	안성*	1964.07.17	군산시 임피면 동군산로 *****	이대*
군산	서수	서수	550-5	전	826	유양*	1965.11.26	군산시 서수면 영성길 *****	채수*
군산	옥서	선연	365-4	대	1009	문봉*	1957.06.23	군산시 옥서면 산동길 *****	김현*

2014년 5월 8일
군 산 시 장



297mm×210mm [백상지 80g/m²]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별지 제24호서식]

분할조서 의결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4-782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조서 의결이 있어 분할조서의 내용에 따라 분할 및 청산을 하게 되니 이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분할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지적소관청(토지정보과)에 이의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1. 공고 기간 : 2014. 5. 8 ~ 2014. 5. 21
- 2. 공고 내용 : 공유토지 분할조서 의결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군·구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분할 후 필지 수	성명	생년월 일	주소	
군산		구암	601-62	공장 용지	328	7	이동*	1939.1 2.07	군산시 외산4길 *****	김성* 외 5인
군산		산북	2642-8	대	165	3	양동*	1968.0 6.03	군산시 산북동 *****	조기*

2014 년 5월 8일

군 산 시



2014/2015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

군산시 공고 제2014-783호

2014/2015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대하여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기 수산업법 제4조 및 수산업법시행령 제2조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1. 2014/2015년도 군산시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사항

수면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적 (ha)	위치	개발방법	개발조건
①	해조류 양식	부류망홍	김 등	69	개야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591호, 제5597호) 포기 조건으로 어장합병 대체개발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②	해조류 양식	부류망홍	김 등	372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594호) 포기조건 으로 어장 축소하여 관련기관 협의조 건 한정어업면허 개발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③	해조류 양식	부류망홍	김 등	50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566호) 포기 조건으로 어장 확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조건 으로 한정어업면허 개발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④	해조류 양식	부류망홍	김 등	155	신시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568호) 포기 조건으로 어장확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조건 으로 한정어업면허 개발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⑤	해조류 양식	부류망홍	김 등	59	무녀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528호) 포기 조건으로 어장확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조건 으로 한정어업면허 개발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⑥	해조류 양식	부류망홍	김 등	174	무녀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577호) 포기 조건으로 어장확대하여 관련기관 협의조건 으로 한정어업면허 개발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⑦	해조류 양식	부류망홍	김 등	100	비안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432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⑧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30	연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 해조류양식(제5511호) 포기 조건으로 패류양식 대체개발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수면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적 (ha)	위치	개발방법	개발조건
⑨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30	개야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일반어업면허 신규개발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⑩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20	십이동파 도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440호) 기간만료에 따른 재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의거 면허우선 순위 결정
⑪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10	십이동파 도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439호) 기간만료에 따른 재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의거 면허우선 순위 결정
⑫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10	십이동파 도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444호) 기간만료에 따른 재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의거 면허우선 순위 결정
⑬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10	십이동파 도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438호) 기간만료에 따른 재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의거 면허우선 순위 결정
⑭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새꼬막 등	20	십이동파 도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449호) 기간만료에 따른 재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의거 면허우선 순위 결정
⑮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새꼬막 등	10	십이동파 도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443호) 기간만료에 따른 재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의거 면허우선 순위 결정
⑯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10	말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437호) 기간만료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조건으로 한정어업 면허 재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의거 면허우선 순위 결정
⑰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10	말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442호) 기간만료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조건으로 한정어업 면허 재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의거 면허우선 순위 결정
⑱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10	말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441호) 기간만료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조건으로 한정어업 면허 재개발 ※수산업법 제13조 의거 면허우선 순위 결정
⑲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30	관리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해조류양식(제5447호) 포기 조건으로 관련기관 협의조건 패류 양식어업 한정어업면허 개발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⑳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30	관리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 해조류양식(제5448호) 포기 조건으로 관련기관 협의조건 패류 양식어업 한정어업면허 개발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수면 번호	어업의 종류	양식방법	품종	면적 (ha)	위치	개발방법	개발조건
㉑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30	야미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으로 신규 한정 어업면허 개발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㉒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30	야미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으로 신규 한정 어업면허 개발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㉓	패류양식	살포식 천해	피조개 등	30	야미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 협의조건으로 신규 한정 어업면허 개발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㉔	어류등 양식	살포식 천해	해삼 등	20	개야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436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㉕	어류등 양식	살포식 천해	해삼 등	30	개야도 인근	일반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435호) 기간만료에 따른 어장 재개발 승인 ※수산업법 제9조 제4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㉖	복합양식	혼합양식 건홍식, 살포식	해조류, 패류	100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594호)을 포기하고 관련 기관 협의조건으로 해조류양식어업 에서 복합양식어업으로 업종변경 한정어업으로 대체개발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㉗	복합양식	혼합양식 건홍식, 살포식	해조류, 패류	100	장자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기존어장(제5564호)을 포기하고 관련 기관 협의조건으로 해조류양식어업 에서 복합양식어업으로 업종변경 한정어업으로 대체개발 ※ 기존 어촌계 대체개발
㉘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3	야미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의 협의조건으로 신규 한정 어업개발 승인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㉙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2	선유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의 협의조건으로 신규 한정 어업개발 승인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㉚	마을어업	-	패류,해조류, 정착성수산 동식물	8	신시도 인근	한정어업 면허	관련기관의 협의조건으로 신규 한정 어업개발 승인 ※수산업법 제9조 제1항에 의거 어촌계에 개발

2. 2014년/2015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조건

- 어업면허를 처분 시에는 수산업법, 동법시행령,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선박항해 및 어장간 거리 등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면허하여야 한다.
- 국가 공익사업이 계획 고시된 수면이나 각종 재해 및 어장환경 오염 등으로 어업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수면, 조류소통이 저해되는 수면, 어장이 밀

집되어 어업생산량 저하가 예상되는 수면에 대하여는 어업면허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 분쟁 및 민원이 제기되어 문제점이 예상되는 지역은 사전에 제반 문제점을 해소한 후 개발하고 해소되지 않을 시는 면허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정어업 면허는 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의 개발가능 의견 또는 협의 완료된 건만 면허처분하고 제한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한다.
- 면허기간 동안 자연재해를 입은 수면을 신규개발하거나 재개발 또는 대체어장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양식재해보험상품이 개발된 품목 및 지역에 한하여 양식재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어장개발계획이 금회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각종사업(국제해양관광 단지조성, 새만금 신항만개발, 새만금 내부개발 해사도 채취 등)이 예상되는 지역에 어업면허를 처분 시에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개발하고 면허기간을 최소화하여 처분하는 등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WTO/DDA, FTA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수입이 급증하거나 급증할 우려가 있는 경쟁력 취약품목, 종묘확보곤란 및 수급불균형으로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종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 개발하여야 한다.
- 동 기본지침 행정사항에 의거 추가사항이 발생 확정시에는 개발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3.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 방법

- 제출기간 : 2014. 5. 26. ~ 2014. 5. 30. 18:00까지
- 제출처 : 군산시청 민원봉사과(1층) 접수창구
- 신청 및 제출서류

가.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

나. 수산업법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어업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1) 수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수산기술자의 자격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수산기술자만 해당합니다) 1부
- 2) 신청일 현재 취득하고 있는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합니다)
- 3) 어업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어업에 종사한 자만 해당합니다)
- 4) 포기하려는 어업권의 면허증 사본(수산업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포기하려는 자만 해당합니다)

5) 여권 사본 등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기타사항

- 승인된 수면별 어장위치도는 우리시 해양수산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군산시 해양수산과 (☎ 063-454-2913)

2014. 5. .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14-78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공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해망2)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실시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관계도서는 군산시청(안전총괄과 454-3864)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4년 5월 일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나. 명 칭 : 해망2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나. 성 명 : 군산시장(안전총괄과)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 52,538m²

나. 규 모 : 가옥철거(241동) 및 정비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4. 5. ~ 2014. 12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붙임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해망2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위치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1	군산시 해망동	1001-5	대	26	13	신우일	해망동 999-137				
					1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2	“	998-115	대	126	126	변중철	해망동 998-2				
3	“	998-117	대	204	204	마원석	인천남구 구월동24 롯데캐슬골드 2409 동 2306호				
5	“	998-118	대	135	67.5	신인식	나운동 156-3 영창 @ 105/1005				
					67.5	차정원	군산시 해망동 999-36				
6	“	998-132	대	58	58	이진덕	군산시 해망동 998-2				
7	“	998-152	대	144	144	김경자	군산시 소룡동 836 동아주택 라/202				
8	“	998-177	대	62	62/6	임영해	해망동 998-2				
					62/6	임광호	해망동 998-2				
					248/6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17				
9	“	998-187	대	242	242	김영숙	지곡동 259 동신@ 103/703				
10	“	998-204	대	50	50	이정희	해망동 998-204				
11	“	998-21	대	74	74	이만우	해망동 1000-70				
12	“	998-237	대	69	69	최준철	해망동 998-2				
13	“	998-246	대	75	75	김종선	해망동 산4				
14	“	998-254	대	7	7	이봉엽	해망동 998-2				
15	“	998-263	대	54	54	김봉구	해망동 998-2				
16	“	998-278	대	33	33	박홍규	해망동 998-2				
17	“	998-293	대	65	65	김봉구	해망동 998-2				
18	“	998-300	대	24	24	강정자	해망동 998-2				
19	“	998-302	대	44	44	김영환	해망동 998-2				
20	“	998-310	대	51	51	황윤주	인천 서가좌동 7 주 공@ 18/105				
21	“	998-37	대	42	42	신봉경	해망동 999				
22	“	998-59	대	21	21	조성옥	해망동 998-2				
23	“	998-75	대	55	55	이복열	해망동 998-2				
24	“	998-94	대	143	143	신용국	해망동 998-94				
25	“	999-189	대	9	9	이종래	해망동 998-21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소	성명	
1	군산	해망동	998-21	주택1	블록+대리석	83.7	해망동 998-21	이만우	
				주택2	블록	83.7			
				주택3	블록+슬라브	48.63			
				보일러실	조립식	13.5			
				출입문	나무	1식			
				정화조		1식			
				계단	콘크리트	1식			
2	군산	“	998-75	주택	블록+스레트	37.47	해망동 998-75	이복열	
				마당	콘크리트	16.34			
				담장	콘크리트 (H=1.7m)	1식			
				정화조		1식			
3	군산	“	998-94	주택	블록+스레트+ 함석	85.18	해망동 998-94	신용국	
				담장	콘크리트 (H=1m)	25m			
				계단	콘크리트 (0.2*0.4*0.8)	8ea			
				문주	1.2*1.8	1식			
				대문	철제 (1.2*1.8)	1식			
				마당	콘크리트	39.03			
				정화조		1식			
4	군산	“	998-117	주택	블록+스레트+ 함석	80.64	해망동 998-117	마원석	
				마당	콘크리트	52.54			
				외부화장실	블록+스레트	3.36			
				담장	콘크리트 (H=1.2m)	35.0m			
				담장	석축 (H=2.4m)	35.0m			
				문주	콘크리트 (0.3*0.3*2.0)	2ea			
				대문	나무 (1.3*2.0)	1식			
				정화조		1식			

순번	지장물소재지			편입물건	구조	면적 (㎡)	소유자		비고
	시.군	리.동	번지				주소	성명	
5	군산	해망동	998-132	주택	블록+스레트	33.3	해망동 998-132	이진덕	
				주택	블록+슬라브	2.8			
				마당	콘크리트	4.7			
				대문	나무	1식			
				정화조		1식			
				화단	석축 (H=0.7m)	3.0			
6	군산	“	998-177	주택	블록+스레트	57.91	해망동 998-117	임갑출 임영해 임성옥 임정수 임성희 임광호	
				마당	콘크리트	13.71			
				대문	철재 (1.6*2.0)	1식			
				문주	콘크리트 (0.4*0.3*2.4)	2ea			
				계단	콘크리트 (0.3*0.15*0.6)	5ea			
				정화조		1식			
7	군산	“	998-237	주택	블록+스레트	47.11	해망동 998-258	최준철	
				목욕탕 및 창고	조적	1식			
8	군산	“	998-293	주택	블록+스레트	66.75	해망동 998-293	김봉구	

군산시 공고 제2014-805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 및 폐기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5. 15

군 산 시 장

1.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4. 5. 15.
2. 폐기공인등록 연월일 : 2014. 5. 15.
3. 신규등록공인 및 인영(2점)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등록사유
차량등록 사업소	군산시장의인 차량민원사무전용		우레탄	인증기 추가 구입
보건사업과	군산산업단지 보건지소장인		흑각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4. 폐기공인 및 인영(1점)

관리부서	공 인 명	인 영	재료	폐기사유
보건사업과	군장산업단지 보건지소장인		후각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